

[별표 1]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I. 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	10	-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II. 입찰가격		※ 입찰가격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III. 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지·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 입찰가격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평점(점) = 배점한도 - 2 ×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평점(점) = 배점한도 - 4 ×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 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 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등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용역규모 대비 최근5년(창업 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 [금액 기준]	가. 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20	10	
		B. 70%이상~100%미만	18	9	
		C. 40%이상~70%미만	16	8	
		D. 10%이상~40%미만	14	7	
		E. 10%미만	0	0	
	나. 유사용역	A. 100%이상	6	3	
		B. 70%이상~100%미만	4	2	
		C. 40%이상~70%미만	2	1	
		D. 10%이상~40%미만	1	0.5	
		E. 10%미만	0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을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 항과 “나” 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단위 :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frac{\text{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text{계약담당공무원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60% 미만	10 9 8 7	

※[주]

①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연구원의 기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한다.(연구보조원, 보조원은 평가에서 제외)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시 평가에 적용할 연구원의 수 및 자격 인정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원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